감사 보고서

- 정부포상 부적격자 추천 및 관리실태 -

2019. 4.

감 사 원

목 차

I . 감사실시 개요····································
Ⅱ. 감사대상업무 현황3
Ⅲ. 감사결과6
1. 감사결과 총괄6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9
(1) 정부포상 부적격자 추천 및 관리 부적정(주의·통보)························ 10
(2) 정부포상에 따른 국가공무원 징계감경기준 운영 개선 필요(통보)19
(3) 정부포상에 따른 지방공무원 징계감경기준 운영 개선 필요(통보)24
(4)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의 정부포상 부당 추천(징계)30
(5)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정부포상 부당 추천(징계·통보)············· 34
(6)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자의 정부포상 부당 추천(주의)41
(7) 명단공표사업장(산재다발)의 정부포상 부당 추천(주의)45
(8) 조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정부포상 추천 미철회(주의)49
(9)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정부포상 추천 미철회(주의)52
(10) 교육부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고도 정부포상 추천 미철회(주의) 55

(11) 시·도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고도 정부포상 추천 미철회(주의)··········· 58
(12) 불문경고 처분을 하고도 정부포상 추천 미철회(주의)61
(13) 명단공표사업장(산재다발)의 정부포상 가능 여부 확인절차 미이행(주의)·64
(14) 공익제보에 따라 자체조사 중인 자의 정부포상 부당 추천(주의)67
(15) 시·도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고도 정부포상 추천 미철회(주의)·········· 70
(16) 시·도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고도 정부포상 추천 미철회(주의)······· 73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2018년 11월 "행정안전부 기관운영감사"(11. 26.~12. 14.)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을 포함하여 상훈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였는데,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같이 정부포상이 제한되는 자를 추천하거나 추천 이후 징계처분 요구와 같이 철회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철회하지 않아 정부포상이 부당하게 수여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정부포상 부적격자 추천 및 관리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행정안전부 기관운영감사"에서 확인된 부적격자 정부 포상 수여 의심사례를 중심으로 그 경위를 파악하여 책임을 규명하고 비위 관련자에 대해 엄중 조치함과 아울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원 감사는 "행정안전부 기관운영감사"에서 확인된 부적격자 정부포상 수여 의심사례에 대한 별도의 자료수집이나 예비조사 없이 감사인력 8명을 투입하여 2019. 1. 14.부터 같은 해 2. 1.까지 15일간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교육부, 창원시, 서귀포시에만 감사장을 설치하였고 나머지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수감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의 감사장을 설치하지 않고 감사원 연락사무소 등을 이용하였으며,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사혁신처에는 질문서를 발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원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등에 질문서를 발부하고 관련자 문답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 교환 및 책임 규명을 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관계기관·단체의 답변과 관련자 문답 내용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9. 4. 25.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업무현황11

1. 정부포상 관계법령

정부포상 근거법령으로는 훈장과 포장의 수여 근거가 되는 「상훈법」,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의 수여 근거가 되는 「정부 표창 규정」, 모범공무원의 수여 근거가 되는 「모범공무원규정」이 있으며 이와 같은 정부포상 추천 및 선발에 관한 준칙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시달하고 있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이 있다.

2. 정부포상 수여현황

2015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정부포상 수여현황을 보면 [표 1]과 같이 91,359명이고 이 중 퇴직공무원이 65,535명으로 71.7%를 차지하고 있다.

[표1] 정부포상자 현황(2015년 10월~2018년 9월)

(단위: 명)

			(= :1 0 /
계 일반국민(외국인, 단체 포함)		공무원	퇴직공무원
91,359	15,473	10,351	65,535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3. 정부포상 수여절차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포상계획을 수립하면 각 부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된 정부 포상 규모를 바탕으로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추천 하게 되는데 이를 간략히 보면 [그림]과 같다.

¹⁾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그림] 정부포상 절차



자료: [정부포상 업무지침] 발췌·재구성

4.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

매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는 일반국민 포상, 공무원 포상, 퇴직공무원 포상, 외국인 포상·추서별로 나누어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제한사유를 간략히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제한사유

연번	내용
1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 형사처분을 받은 자
3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4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5	▶「상훈법」및 「정부 표창 규정」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법인(단체 또는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8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9	■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10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야기한 자 또는 단체(기관)

자료: 「정부포상 업무지침」 발췌 및 재구성

5. 정부포상 부적격자 배제 절차

각 부처는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정부포상을 추천하게 되는데「정부포상 업무지침」에 규정된 이와 같은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는 ① 제한 사항 확인 ② 후보자 공개검증 ③ 후보자 공적내용 현장확인 ④ 공적심사 순서로 실시된다.

이 중 ① 제한사항 확인 절차에서는 자체 공적심사 전에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명단공표,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관련기관 등에조회하여 부적격자를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포상대상자 소속기관은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물의 야기 여부를 확인하고 포상추천 이후에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로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또는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추천권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에 해당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도록 되어 있다.

6. 정부포상 부적격자 추천기관에 대한 제재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보면 행정안전부는 추천기관의 잘못으로 부적격자가 추천된 포상은 포상 규모 감축 및 폐지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추천기관에 대해서는 우수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규모 협의 시 벌칙(전체규모의 10% 이상 감축)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표 3]과 같이 총 18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이확인되어 이에 대한 징계 및 주의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u>지적사항 총괄</u>

(단위: 건, 명)

합 계		지계(이의)	7 01	E LI	
건수	인원	징계(인원)	주의	통보	
18	4	2(4)	12	4	

가. 추천제한 사유가 있는 자의 정부포상 추천(6건)

-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 은 2016. 10. 20.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2015. 6. 9.)을 받은 A의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 같은 해 12. 31.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되는 부당한 결과 초래 ⇒ A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요구와 A의 포상취소 방안 마련 통보
- 육군교육사령부는 2017. 6. 26. 감사원의 징계요구(2017. 1. 17.)와 재심의 청구 기각결정 (2017. 6. 15.)을 받은 B의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 대통령표창이 수여되는 부당한 결과 초래 ⇒ 정부포상 추천 요청 및 조회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 1명에 대해 징계요구
- 서귀포시는 2017. 11. 17. 조사개시 통보(2015. 7. 15.)를 받고 2년 넘게 법적분쟁 및 민원을 유발한 C의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 같은 해 12. 29.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되는 결과 초래 ⇒ 조사 개시 통보 등에 대한 조회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3명에 대해 주의요구

- 서울특별시는 2016. 3. 30. 공익제보 등록 및 자체조사가 시작(2016. 3. 22.)된 D의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 같은 해 6. 9. 대통령표창이 수여되는 결과 초래 ⇒ 자체조사 등에 대한 조회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주의요구
- 행정안전부는 2017. 12. 1.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공표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정부포상 추천 제한을 통보(2017. 11. 22.)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대해 정부포상을 추천, 같은 해 12. 15.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되는 결과 초래 ⇒ 관련자 2명에 대해 주의요구
- 보건복지부는 2017. 12. 1.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공표(2015. 12. 16.)된 아산시에 대해 추천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확인 없이 정부포상을 추천, 같은 해 12. 19. 대통 령표창이 수여되는 결과 초래 ⇒ 기관주의

나. 철회사유가 발생한 자의 정부포상 추천 미철회(7건)

- 교육부는 2017. 11. 23. 정부포상을 추천한 E에 대해 12. 15.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개시통보를 받고도 미철회, 같은 해 12. 29. 대통령표창 수여 ⇒ 관련자 3명에 대해 주의요구
- **우정사업본부**는 2016. 11. 2.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한 F에 대해 12. 19. 수사개시통보를
 받고도 미철회, 같은 해 12. 31. 대통령표창 수여 ⇒ 기관주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는 2015. 6. 18.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한 교수 G에 대해 8. 17. 교육부로부터 징계 처분 요구를 받고도 미철회, 같은 해 10. 23. 홍조근정훈장 수여 ⇒관련자 1명에 대해 주의요구
- **창원시**는 2017. 11. 2.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한 H에 대해 11. 23. 경상남도로부터 징계처분 요구를 받고도 미철회, 같은 해 12. 29. 국무총리표창 수여 ⇒**관련자 2명에 대해 주의요구**
- **히동군**은 2017.11.7.정부포상 추천을 요청한 에 대해 12.4.경상남도로부터 징계처분 요구를 받고 도미철회, 같은 해 12.29.대통령표창 수여 ⇒ 관련자 2명에 대해 주의요구
- 순천시는 2017. 10. 31.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한 J에 대해 11. 15. 전라남도로부터 징계처분 요구를 받고도 미철회, 같은 해 12. 29. 국무총리표창 수여 ⇒ 관련자 2명에 대해 주의요구
- **서천군**은 2015. 10. 28.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한 K에 대해 2016. 4. 28. 불문경고를 하고도 미철회, 같은 해 7. 28. 대통령표창 수여 ⇒ **관련자 2명에 대해 주의요구**

다. 정부포상 부적격자 추천 및 관리

- 행정안전부는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가 있는 자를 추천하거나 추천 이후 철회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철회하지 않는 등 부적격자 정부포상이 빈번한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
- 포상업무 관련자들이 추천제한 사유와 달리 철회사유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포상계획 또는 공적심사 자료를 통해 철회사유를 고지하는 방안 미강구
- 부적격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 근거 및 절차를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 또한 미강구
- ⇒ 부적격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철저(주의), 정부포상 철회사유 고지 방안과 부적격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 각각 마련 통보
-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정부포상 업무지침」과 달리 정부포상을 부당하게 받은 자가 추천 제한 및 철회사유와 관련된 징계에서 해당 정부포상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경 받거나 감경받을 소지가 있는데도 이를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 미강구
 - ⇒ 부적격자가 받은 정부포상 공적은 해당 징계의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미련 통보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가. 명세: 별첨

개별처분요구안 (1)번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정부포상 부적격자 추천 및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행정안전부

조 치 기 관 행정안전부

내 용

1. 업무 개요

행정안전부는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모범공무원 규정」 등에 따라 정부포 상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2015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정부포상자는 [표 1]과 같이 91,359명에 달하고 있다.

[표 1] 정부포상자 현황(2015년 10월 ~ 2018년 9월)

(단위: 명)

계	일반국민(외국인, 단체 포함) 공무원 토		퇴직공무원
91,359	15,473	10,351	65,535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훈장 및 포장(「상훈법」),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정부 표창 규정」), 모범 공무원(「모범공무원 규정」) 선발에 관한 준칙을 정한 연도별「정부포상 업무지침」에는 공무원 포상과 관련하여 [표 2]와 같은 추천제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표 2]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

구 분	내용			
1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 형사처분을 받은 자			
3	■ <u>징</u> 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u>징</u> 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4	■ 「국가공무원법」제2조 제3항제1호및「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5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6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법인(단체 또는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8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주(기관장)			
9	■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고액상습체납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자			
10	■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야기한 자 또는 단체(기관)			

자료: [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재구성

또한「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추천기관은 자체공적심사 전에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를 엄밀히 조사하고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를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함과 아울러 정부포상 추천 이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로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또는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에 해당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도록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정부포상 부적격자 추천 및 추천 미철회

이에 감사원 감사(2019. 1. 14. ~ 2. 1.)에서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 중 징계 ([표 2] 3번 참조)와 산업재해 명단공표([표 2] 6번 참조)를 중심으로 정부포상 수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추천제한 사유가 있는 자를 추천하거나 추천 이후 철회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철회하지 않아 부적격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 13개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① 추천제한 사유가 있는 자를 추천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6개 사례

계룡대근무지원단과 육군교육사령부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서귀포시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자, 서울특별시는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인 자의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하여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①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은 2015. 6. 9. 감봉3월의 징계를 받은 A에 대해 2016. 10. 20.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 같은 해 12. 31.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되는 결과 초래
- ② 육군교육사령부에서 2017. 1. 17. 감사원의 징계처분 요구와 같은 해 6. 15. 재심의 청구 기각결정을 받은 B에 대해 같은 해 7. 13.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 같은 해 9. 28. 대통령표창이 수여되는 결과 초래
- ③ 서귀포시는 2017. 11. 17.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조사개시 통보(2015. 7. 15.)와 더불어 법적 분쟁 및 민원을 아기한 C의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 같은 해 12. 29.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되는 결과 초래
- ④ 서울특별시는 <u>2016. 3. 30.</u> 민원이 제기되어 자체감사부서에서 조사 중인 D의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 같은 해 6. 9. 대통령표창이 수여되는 결과 초래

또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공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아산시를 각각 추천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⑤ 행정안전부는 2017. 12. 1.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공표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정부포상 추천제한을 통보 (2017. 11. 22.)한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정부포상을 추천, 같은 해 12. 15.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되는 결과 초래
- ⑥ 보건복지부는 2017. 12. 1.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공표(2015. 12. 16.)된 아산시에 대해 추천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확인 없이 정부포상을 추천, 같은 해 12. 19. 대통령표창이 수여되는 결과 초래

② 추천 이후 철회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미철회, 정부포상이 수여된 7개 사례

우정사업본부와 교육부는 정부포상 추천 이후 관계기관(경찰청, 감사원)으로부터 비위사실에 대한 수사·조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정부포상 추천을 철회하지 않아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이 각각 수여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① 우정사업본부는 2016. 11. 2.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한 F에 대해 같은 해 12. 19.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정부포상 추천을 미철회하여 같은 해 12. 31. 대통령표창이 수여되는 결과 초래
- ② 교육부는 2017.11. 23. '2017년 우수공무원 포상자'로 추천한 E에 대해 같은 해 12. 15. 조사개시통보(감사원)를 받고도 정부포상 추천을 미철회하여 같은 해 12. 29. 대통령표창이 수여되는 결과 초래

또한 정부포상 추천 이후 관계기관(교육부, 경상남도, 전라남도)으로부터 각각 징계 요구를 받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3개 시·군(순천시, 창원시, 하동군), 불문경고 한 서천군에서 정부포상 추천을 철회하지 않아 정부포상(홍조근정훈장, 국무총리표장, 대통령표창)이 각각 수여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③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15. 6. 18.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한 ○학부 교수 G에 대해 같은 해 8. 17. 교육부 의징계처분 요구를 받고도 정부포상 추천을 미철회하여 같은 해 10.23. '홍조근정훈장'이 수여되는 결과 초래
- ④ 순천시는 2017. 10. 31.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한 J에 대해 같은 해 11. 15. 전라남도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고도 정부포상 추천을 미철회하여 같은 해 12. 29.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되는 결과 초래
- ⑤ 창원시는 2017. 11. 2.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한 H에 대해 같은 해 11. 23. 경상남도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고도 정부포상 추천을 미철회하여 같은 해 12. 29.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되는 결과 초래
- ⑥ 하동군은 2017. 11. 7.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한 I에 대해 같은 해 12. 4. 경상남도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고 도 정부포상 추천을 미철회하여 같은 해 12. 29. 대통령표창이 수여되는 결과 초래
- ① 서천군은 2015. 10. 28.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한 K에 대해 2016. 4. 26. 불문경고를 하고도 정부포상 추천을 미철회하여 같은 해 7. 28. 대통령표창이 수여되는 결과 초래

나. 정부포상 추천철회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방법 마련 필요

또한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정부포상 부적격자 추천 및 미철회 사유 및 경위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와 관련된 6개 기관·단체 모두 포상계획 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자료를 통해 추천제한 사유가 고지되고 있어 관련자들이 추천제한 사유를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나 고의 또는 과실, 업무상 착오나 관계부서(추천부서, 감사부서) 간 협조 미흡 등으로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되는 자를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 고지 및 업무 관련자 인지 여부

¬н	7171	TUĐI ILO	제한사유	고지여부	업무 관련자
구분	기관	제한사유	포상계획	심사자료	인지 여부
1	■계룡대근무지원단	■ 2015. 6. 9. 감봉3월 ■ 2016. 10. 20. 정부포상 추천	고지	고지	인지
2	▪육군교육사령부	■ 2017. 1. 17.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 ■ 2017. 6. 15. 감사원의 재심의 청구 기각 ■ 2017. 7. 13. 정부포상 추천	고지	고지	인지
3	■서울특별시	■ 2016. 3. 15. 공익제보 등록 ■ 2016. 3. 22. 조사관 지정, 자체조사 시작 ■ 2016. 3. 30. 정부포상 추천	고지	고지	인지
4	■서귀포시	■ 2015. 7. 15. 제주특별자치도 조사개시 통보 ■ 2015. 6.~2017. 9. 법적분쟁 및 민원유발 ■ 2017. 11. 17. 정부포상 추천	고지	미고지	인지
5	■행정안전부	■ 2016. 12. 14. 산재다발사업장 지정 ■ 2017. 12. 1. 정부포상 추천	고지	미고지	인지
6	■보건복지부	■ 2015. 12. 16. 산재다발사업장 지정 ■ 2017. 12. 21. 정부포상 추천	고지	미고지	인지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반면에 [표 4]와 같이 추천철회 사유와 관련된 7개 기관·단체 중 창원시와 하동군 관련자들만 경상남도에서 표창계획을 통보하면서 철회사유(추천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등 표창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표창 추천의 철회를 요청)를 고지하여 인지하고 있었을 뿐 나머지 5개 기관·단체는 포상계획이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자료에 정부포상 추천철회 사유가 고지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관련자들이 정부포상 추천철회 사유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표 4] 정부포상 추천철회 사유 고지 및 업무 관련자 인지 여부

7 8	והוד	취득시오	철회사유	고지 여부	업무 관련자
구분	기관	철회사유	포상계획	심사자료	인지 여부
1	■창원시	■ 2017. 11. 2. 정부포상 추천 ■ 2017. 11. 23. 경상남도 징계처분 요구 ■ 2017. 12. 20. 징계요결 요구	고지	미고지	인지
2	▪하동군	■ 2017. 11. 7. 정부포상 추천 ■ 2017. 12. 4. 경상남도 징계처분 요구 ■ 2017. 12. 7. 징계처분 요구	고지	미고지	인지
3	▪교육부	■ 2017. 11. 23. 정부포상 추천 ■ 2017. 12. 15.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	미고지	미고지	미인지
4	■우정사업본부	■ 2016. 11. 2. 정부포상 추천 ■ 2016. 12. 22. 범죄발생(폭행) 통보·접수	미고지	미고지	미인지
5	■ 순천시	■ 2017. 10. 31. 정부포상 추천 ■ 2017. 11. 15. 전라남도의 징계처분 요구 ■ 2017. 12. 8. 징계의결 요구	미고지	미고지	미인지
6	■서천군	■ 2015. 10. 28. 정부포상 추천 ■ 2015. 4. 26. 불문경고	미고지	미고지	미인지
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2015. 6. 18. 정부포상 추천 ■ 2015. 8. 17. 교육부의 징계처분 요구	미고지	미고지	미인지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포상업무 담당자들이 정부포상 추천 철회사유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추천제한 사유와 마찬가지로 추천기관·단체에서 포상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적심사 위원회 심사자료를 작성할 때 정부포상 추천철회 사유도 함께 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다. 부적격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 마련 필요

「상훈법」제8조,「정부 표창 규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훈장, 포장, 표창 등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 징계절차 진행 등과 같이 정부포상 추천제한 및 철회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거짓 공적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포상에 대해서는 "추천 당시 추천제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포상을 받게 된 경우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으로 보아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명시되어 있고, 포상 당사자로부터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정부포상 동의 및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다.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발췌)

■ 본인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퇴직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 공무원포상에 대해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정부포상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했으면서도 부적격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 근거 및 절차를 「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발췌)

■ 본인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3항 가"의 내용과 같이 「정부포상 업무지침」과 달리 부적격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의 취소는 물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표 5]와 같이 부적격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 근거 및 절차를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5] 정부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취소 근거 및 절차 명확화 방안(예시)

구분	내용
정부포상 취소 대상 (추가)	■ 정부포상 추천 및 철회사유와 관련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뒤늦게 추천제한 및 철회사유가 발견된 후 공적심사위원회에서「상훈법」등에 규정 된 취소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사·의결한 경우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추가)	■ 본인은 감사원·검찰·경찰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또는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정부포상이 수여되기 전에 이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추천기관에 알리겠습니다.

관계기관 의견

행정안전부는 정부포상 추천 이후 추천제한 요건이 발생하였음에도 간혹 확인되지 않아 정부포상이 확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상계획 수립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자료 작성 시 추천철회 사유를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적격자의 정부포상과 관련해서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취소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① 앞으로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가 있는 자를 추천하거나 추천 이후 철회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철회하지 않아 부적격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② 포상계획 수립 및 공적 심사자료 작성 시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와 마찬가지로 철회사유도 함께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 「정부포상 업무지침」과 달리 부적격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의 취소 근거 및 절차를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각각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개별처분요구안 (2)번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정부포상에 따른 국가공무원 징계감경기준 운영 개선 필요

소 관 기 관 인사혁신처

조 치 기 관 인사혁신처

내 용

1. 업무 개요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징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무원 징계령」제17조의3 및「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표 1]과 같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으나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감경대상 공적 및 감경기준

구 분	내용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	바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가건데시고저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감경대상 공적	가. 6급 이하 공무원 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6급 이하별정직 공무	원 등	
	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인정	감경	
	파면	해임	
	해임	강등	
감경기준	강등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책	불문(경고)	

자료: 관계법령 발췌 및 재구성

또한「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에 따르면「공무원 징계령시행규칙」제4조 제1항은 임의적 감경기준이므로 혐의자에게 일정한 공적이 있는경우에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매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는 공무원의 정부포상에 대해 [표 2]와 같은 추천제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정부포상 추천 이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로확인되거나 감사원·검찰·경찰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또는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에 해당자에 대한추천을 철회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

구 분	내 용		
1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 형사처분을 받은 자		
3	■ <u>징</u> 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u>징</u> 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4	▶ 「국가공무원법」제2조 제3항제1호및「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선거에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5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6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법인(단체 또는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8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9	■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고액상습 체납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자		
10	■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야기한 자 또는 단체(기관)		

자료: [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재구성

따라서 이와 같은 「정부포상 업무지침」과 달리 정부포상을 부당하게 받은 자가 정부포상 추천제한 및 철회사유와 관련된 징계에서 해당 정부포상과 관련된 공적으로 부당하게 감경받는 일이 없도록 해당 정부포상과 관련된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감사(2013. 9. 23.~10. 25.)에서는 국무조정실이 2009. 11. 20.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한 L에 대해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2009. 12. 7.)를 받고도 추천을 철회하지 않아 같은 해 12. 31. 모범공무원 포상이 수여되었고, L는 2010. 3. 29. 모범공무원 포상(2009. 12. 31.)과 조달청장표창 (2003. 1. 3.)을 근거로 불문경고로 감경받은 사실이 지적되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포상 부적격자 추천 및 관리실태" 감사(2019. 1. 14.~2. 1.)

에서도 교육부, 우정사업본부, 육군교육사령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었는데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교육부는 2017. 11. 23. 정부포상을 추천한 E에 대해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2017. 12. 15.)를 받고도 철회하지 않아 같은 해 12. 29. 대통령표창이 수여되었고, 교육부의 경징계의결 요구(2018. 5. 4.)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8. 28.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결정을 보류하였다.
- ② 우정사업본부는 2016. 11. 2.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한 F에 대해 수사개시 통보 (2016. 12. 19.)를 받고도 추천철회를 요청하지 않아 같은 해 12. 31. 대통령표창이수여되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7. 4. 7. 견책 상당의 징계로 판단하고도 우수공무원(대통령표창 2016. 12. 31.)으로 선발된 공적과 장관표창(2014. 4. 22.)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하였다.
- ③ 육군교육사령부는 감사원의 징계처분요구(2017. 1. 17.) 및 재심의청구 기각 결정(2017. 6. 15.)을 받은 B에 대해 2017. 7. 13.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하여 같은 해 9. 28. 대통령표창이 수여되었고, 육군본부중앙징계위원회는 2017. 10. 24. 징계처분 요구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유예를 건의하였으나 육군본부에서는 같은 해 11. 6. 견책처분을 하였다.
- ④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15. 6. 18.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한 교수 G에 대해 교육부의 징계처분요구(2015. 8. 17.)를 받고도 추천철회를 요청하지 않아 같은 해 2015. 10. 23. 홍조근정훈장이 수여되었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는 2016. 5. 31. 비위사실을 인정하여 견책으로 의결하고도 대통령표창²⁾ (2015. 10. 23.) 등을 참작하여 경고로 감경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 과학기술대학교는 같은 해 6. 16.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포상 업무지침」과 달리 정부포상을 부당하게 받은 자가 추천제한 및 철회사유와 관련된 해당 징계에서 해당 정부포상을 이유로 감경받거나 감경받을 소지가 있는데도 인사혁신처는 해당 정부포상과 관련된 공적을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인사혁신처는 정부포상에 따른 징계감경이 부적절하게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사혁신처장은 「정부포상 업무지침」과 달리 정부포상을 부당하게 받은 국가공무원이 추천제한 및 철회사유와 관련된 징계에서 해당 정부포상과 관련된 공적으로 부당하게 감경받는 일이 없도록 해당 정부포상과 관련된 공적을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²⁾ 교수 G이 2015. 10. 23. 받은 포상은 홍조근정훈장이나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 회는 징계의결서에 대통령표창으로 명시하였음

개별처분요구안(3)번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정부포상에 따른 지방공무원 징계감경기준 운영 개선 필요

소 관 기 관 행정안전부

조 치 기 관 행정안전부

내 용

1. 업무개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상훈법」, 「정부표창 규정」,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정부포상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8조 및「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학식,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결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표 1]과 같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으나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감경대상 공적 및 감경기준

구 분	내 용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717461141 7774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감경대상 공적	가. 6급 이하 공무원 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6급 이하별정직 공무	원 등		
	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인정	감경		
	파면	해임		
	해임	강등		
감경기준	강등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책	불문(경고)		

자료: 관계법령 발췌 및 재구성

그리고 매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는 공무원 포상과 관련하여 [표 2]와 같은 추천제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정부포상 추천 이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로 확인되거나 감사원·검찰·경찰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또는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에 해당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

구 분	내 용			
1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 형사처분을 받은 자 ■ <u>징</u> 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u>징</u> 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4	■ 「국가공무원법」제2조 제3항제1호및「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선거에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5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6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법인(단체 또는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8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9	■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고액상습 체납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자			
10	■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야기한 자 또는 단체(기관)			

자료: [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재구성

따라서 이와 같은 「정부포상 업무지침」과 달리 정부포상을 부당하게 받은 자가 정부포상 추천제한 및 철회사유와 관련된 징계에서 해당 정부포상과 관련된 공적으로 부당하게 감경받는 일이 없도록 해당 정부포상과 관련된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2013. 9. 23.~10. 25.)에서는 영광군이 2010. 12. 3.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2010. 11. 24.)를 받은 M의 정부포 상 추천을 요청하여 같은 해 12. 31. 근정포장이 수여되었고, 감사원의 징계요구 (2011. 6. 29.)에 대해 2012. 12. 13. 근정포장(2010. 12. 31.)과 국무총리표창(1999. 2. 28.)을 근거로 불문경고로 감경받은 사실이 지적되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포상 부적격자 추천 및 관리실태" 감사(2019. 1. 14.~2. 1.)에서도 서울특별시, 창원시, 순천시, 서귀포시, 하동군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었는데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서울특별시는 2016. 3. 30. 공익제보가 접수(2016. 3. 15. 근무태만 및 민원처리부적정)되어 자체조사(2016. 3. 22.)가 시작된 D의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하여 같은 해6. 9.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었고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는 2017. 2. 27.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으로 의결하였다.
- ② 창원시는 2017. 11. 2. 정부포상의 추천을 요청한 H에 대해 경상남도의 징계처분 요구(2017. 11. 23.)와 징계의결 요구(2017. 12. 20.)가 있었는데도 추천철회를 요청하지 않아 같은 해 12. 29.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되었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는 2018. 1. 18.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표창감경하여 견책으로 의결하였다.
- ③ 순천시는 2017. 10. 31. 정부포상의 추천을 요청한 J에 대해 전라남도의 징계처분 요구(2017. 11. 15.)와 징계의결 요구(2017. 12. 8.)가 있었는데도 추천철회를 요청하지 않아 같은 해 12. 29.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되었고, 전라남도인사위원회는 2018. 3. 5. 감봉 1개월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8. 8. 국무총리표창 공적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불문경고로 감경하였다.
- ④ 서귀포시는 2017. 11. 17.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조사개시 통보(2015. 7. 15. 학교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건축허가 관련)를 받고 2년 넘게 법적분쟁 및 민원을

유발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C의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하여 같은 해 12. 29.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되었고, 2018. 3. 19. 서귀포시인사위원회는 견책으로 양정하고도 국무총리표창 2건(2017. 12. 29., 2005. 12. 31.)과 장관표창 1건(2008. 9. 30.)을 감안하여 표창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하였다.

⑤ 하동군은 2017. 11. 7. 정부포상의 추천을 요청한 I에 대해 경상남도의 징계처분 요구(2017. 12. 4.)와 징계의결 요구(2017. 12. 7.)가 있었는데도 추천철회를 요청하지 않아 2017. 12. 29. 대통령표창이 수여되었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는 2018. 1. 18.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표창감경하여 견책으로 의결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포상 업무지침」과 달리 정부포상을 부당하게 받은 자가 추천제한 및 철회사유와 관련된 징계에서 해당 정부포상과 관련된 공적으로 감경받거나 감경받을 소지가 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해당 정부포상과 관련된 공적을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행정안전부는 포상추천 이후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추천을 철회하지 않아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당해 징계에서 해당 포상을 근거로 감경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조사 및 수사결과 통보 이후 포상 추천된 경우에는 징계 양정 감경을 배제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과 달리 정부포상을 부당하게

받은 지방공무원이 추천제한 및 철회사유와 관련된 징계에서 해당 정부포상과 관련된 공적으로 부당하게 감경받는 일이 없도록 해당 정부포상과 관련된 공적을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징계요구

제 목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의 정부포상 부당 추천

소 관 기 관 육군교육사령부

조 치 기 관 육군교육사령부

내 용

1. 사건 개요

육군교육사령부는 2017. 6. 23. 육군본부로부터 시달된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포상계획'에 따라 같은 해 7. 13. [표 1]과 같이 22명에 대한 정부포상의 추천을 육군본부에 요청하였다.

[표1]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개인포상 대상자 추천 내역

(단위: 명)

				(= .1 0)	
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2	5	1	11	5	

자료: 육군교육사령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17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에서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되고 자체 공적심사전에 위와 같은 추천제한 사유를 엄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는 공적심사 대상에서제외하여야 하며,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물의 야기 여부는 포상대상자

소속기관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 1]의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중 B에 대해서는 2017. 1. 17. 감사원의 징계처분 요구('로켓탄 폐기처리 후속 계약업무 부당 처리')가 있었고, 다음 날인 1. 18. 관련 문건("탄약 폐기처리사업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이 육군종합군수학교 □실에 통보되었으며, 재심의 청구(2017. 2. 15.)에 대해서도 같은 해 6. 15. 감사원의 기각결정이 있었다.

또한, 육군교육사령부는 2017. 6. 7.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포상 준비계획'을 육군종합군수학교 등 예하부대에 시달하면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 처분 요구 중인 자'와 같은 추천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이를 확인·준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처분 요구 및 재심의 기각결정을 받은 B을 공적심사 및 정부포상 추천요청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관계행정기관에서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육군정보통신학교 △부 ▷과 인사행정장교 N(전 육군종합군수학교 △부 ☆처)은 2017. 5. 12.부터 2018. 6. 25.까지 인사관리, 상훈, 징계, 각종 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4. 8. 28. 이후 계속 인사분야에 근무하면서 상훈업무를 수행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나 범죄경력 등은 통상 공문으로 조회하고 답변을 받아 처리하여 왔다.

그런데도 N은 2017. 6. 22.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자료를 작성하고 간사로 참여하면서는 [표 2]와 같은 공적심사 대상

14명에 대한 정부포상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에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육군종 합군수학교 □실 등에 공문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표 2]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관련 육군종합군수학교 공적심사 현황

(단위: 명)

계	학교 본부	⊲교육단	◇교육단	♡교육단	쇼 교육단
14	5	2	3	2	2

자료: 육군교육사령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 과정에서 N은 정부포상 추천 제한사유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육사단 포병여 단장(전 육군종합군수학교 ☆처장) ○의 문의에 대해 확인을 완료했다고 답변하는 등 정부포상 추천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처분 요구(2017. 1. 17.)와 재심의 기각결정 (2017. 6. 15.)을 받아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되는 B이 2017. 6. 22.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및 같은 해 6. 26. 육군종합군수학교의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정부포상 추천 요청대상에 포함되었고, 같은 해 7. 13. 육군교육사령부의 정부포상 추천 요청대상에 포함되었고, 같은 해 9. 28. 대통령표창을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후 육군본부 중앙징계위원회는 B에 대해 2017. 10. 24. 감사원의 징계처분 요구 내용('로켓탄 폐기처리 후속 계약업무 부당 처리')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점, 개인적인 비위행위가 아니라 사심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 유예를 건의하였으나 육군본부에서는 같은해 11. 6. 견책처분을 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련자 주장 및 판단

N은 정부포상 추천제한 여부 확인에 대해 결과적으로 미흡했다면서도 육군교육사령부 ●실에 전화로 문의했다고 주장하나 ●실 직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육군종합군수학교 □실 P가 사무실을 방문하자 정부포상 추천요청 대상 14명의 명단을 보여주며 특이사항이 있는지 구두로 문의했다고 주장하나 P는 그런 문의 자체가 없었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전화 또는 구두로 확인했다는 주장 또한 믿기 어려운 실정이다.

② 관계기관 의견

육군교육사령부는 감사원 처분요구 통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함과 아울러 포상추천(장성급부대), 포상심의(육군교육사령부), 최종 확인(육군본부)의 3단계 확인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인사행정장교로서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대한 확인업무를 태만히 하여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의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한 N의 행위는 「군인사법」제56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육군교육사령관은 앞으로 관계행정기관에서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포상 추천 및 요청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태만히 한 N에 대해서는 「군인사법」제59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 시기 바랍니다.(징계) 개별처분요구안 (5)번

감 사 원

징계요구 및 통보

제 목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정부포상 부당 추천

소 관 기 관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

조 치 기 관 ① 해군본부 ② 국군복지단 ③국방부조사본부 ④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워단

내 용

1. 사건 개요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은 2016. 10. 20. '제68주년 국군의 날 행사 유공'과 관련하여 [표 1]과 같이 14명의 정부포상 추천을 국방부에 요청하였다.

[표1] 제68주년 국군의 날 행사 유공자 표창 추천 현황

(단위: 명)

계	국무총리	장관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기획단장
14	1	3	1	1	8

자료: 계룡대근무지원단 제출자료 재구성

이 중 국방부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 A(전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 참모장)은 2015. 6. 9.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되는데도 위와 같은 추천 및 요청 절차를 거쳐 2016. 12. 31. 국무총리표창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공적심사위원장이 본인의 정부포상 추천요청을 요구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상훈법」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정부 표창 규정」제8조에 따르면 포상후보자는 공적조서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하되,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인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되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상훈법」제8조와「정부 표창 규정」제18조에 따르면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표창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계룡대근무지원단은 2016. 10. 13. '제68주년 국군의 날 행사 및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유공자 표창 계획' 시달 및 같은 해 10. 17. '제68주년 국군의 날 행사 및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유공자 선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등을 거쳐 [표 2]와 같이 ▲처 Q와 ▶대대 R을 국무총리표창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자체 예규인 「상훈 및 징계」 규정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표 2] 국무총리표창 추천 후보자 현황

구분	성명	계급	소속	직책	비고(현 근무처)
1	Q	-	▲ਨੀ	인사계획장교	계룡대근무지원단 전직교육 중
2	R	-	▶대대	운영과장	2017. 6. 30. 전역

자료: 계룡대근무지원단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공적심사위원회는 Q와 R의 공적조서를 심사하여 적합자에 대해 정부포

상 추천을 요청하고, 이와 달리 공적조서도 없고 제척·회피 대상인 공적심사위원 장을 심사하여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하는 일이 없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A은 2015. 12. 18.부터 2016. 12. 20.까지 계룡대근무지원단 참모장이면서 이 건 공적심사위원장으로서 심사안건 서류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받은 자는 추천이 제한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2016. 10. 18. 열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간사였던 R으로부터 추천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본인이 2015. 6. 9.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본인에 대한 추천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관계법령과 다르게 해당 안건의 심사도 회피하지 않았다.

더욱이, 공적심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인 A을 관계법령에 따라 제척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추천절차를 거친 심사대상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공적조서도 없는 A의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심사·의결하고 당초의 심사대상인 Q와 R은 국무총리표창 추천 요청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추천제한 사유에 대한 확인 없이 공적심사위원장의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1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되나 징계처분이 사면되거나 말소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한데,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자체 예규인 「상훈 및 징계」에 따르면 감봉처분의 말소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업무지침에 따르면 자체 공적심사 전에 추천제한 사유를 확인하여 부적격자는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천한 이후에도 추천제한 사유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을 철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표 3]과 같이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공군본부나 육군본부를 통해 징계 기록을 확인하는 데에는 통상 1~2일이면 가능하였다.

[표 3] 계룡대근무지원단의 징계기록 확인 현황

	구분 제목 요청일		회신일	회신기관	
1	퇴직자정부포상 추천	자력기준표 사본 제출	2016. 4. 4.	2016. 4. 5.	공군본부
2	국군의 날 정부포상 추천	징계처분 사항 확인	2017. 7. 17.	2017. 7.18.	육군본부

자료: 계룡대근무지원단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2항 나"의 내용과 같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A에 대해서는 추천제한 사유가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여 추천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 의 철회를 국방부에 요청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와 관련하여 해군본부 ▼본부 R(전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 ▲처)은 2016. 2. 29.부터 2019. 2. 26.까지, 국군복지단 ◀본부장_T(전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 ▲ 처장)는 2015. 12. 29.부터 2017. 1. 2.까지 상훈업무를 담당 또는 총괄하면서 2016. 10. 13. 징계비리 관련자는 추천을 금지한 '제68주년 국군의 날 행사 및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유공자 표창 계획' 시달 문건을 기안 또는 결재한 바 있다.

또한, R과 T는 2016. 10. 17. 정부포상 추천 제한사유를 명시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문건을 기안 또는 결재한 바 있고, R은 같은 해 10. 18. 열린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로서 추천제한 사유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한 바 있으며 T는 심사위원으로서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바가 있다.

그리고 R과 T는 "2항 나"의 내용과 같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조서도 없이 추천된 A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달리 추천제한 사유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R과 T는 징계전력이 있는 A이 본인을 추천할 리가 없다거나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사유로 추천제한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16. 10. 20. A이 포함된 '제68주년 국군의 날 행사 유공자 표창 추천' 문건을 기안 또는 결재하였고, 이를 시행한 이후에도 추천제한 사유를 확인하여 정부포상 추천의 철회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5. 6. 9.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A이 2016. 12. 31. 국무총 리표창을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① 관련자 의견

A은 정부포상추천 제한사유인 징계처분(감봉 3개월) 전력에 대하여 본인의 육 군 근무시절 육규(120)의 '경·중징계자라 할지라도 현저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정부포상 추천 또는 요청이 가능했다고 생각했으 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안건의 명단에 본인이 없었고, 징계처분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심사도 회피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잘못된 업무처리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R과 T는 징계전력이 있는 A이 본인을 추천할 리가 없고 시일이 촉박하여 추천제한 사유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포상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A의 징계처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업무처리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② 관계기관 의견

계룡대근무지원단은 계룡대근무지원단「상훈 및 징계」에 공적심사위원의 제척· 회피 조항을 추가하고,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보완함과 아울러 부정 추천된 정부포상의 취소(A의 국무총리표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부포상 추천 및 요청업무를 태만히 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게 한 R, T, A의 행위는 각각 「군인사법」제56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A은 공적심사위원장으로서 본인의 정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심사안건에 포함되지도 않은 본인의 정부포상 추천을 요구하고 관련 심사도 회피하지 않는 등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 ① 해군참모총장은 정부포상 추천 제한사유 확인 등의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R을 「군인사법」제59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 ② 국군복지단장은 정부포상 추천 제한사유 확인 등의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T를 「군인사법」제59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 ③ 국방부조사본부장은 본인의 징계사실을 누락하고 본인의 정부포상 추천요청을 요구하면서 회피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적심사위원회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A을 「군 인사법」제59조에 따라 징계처분(정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 ④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포상 추천 및 요청 업무를 철저히 하고, A이 받은 국무총리표창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개별처분요구안 (6)번

감 사 원 주 의 유 구

제 목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자의 정부포상 부당 추천

소 관 기 관 서귀포시

조 치 기 관 서귀포시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는 2017. 11. 17. '2017년 하반기 우수·모범공무원 포상<u>'</u>과 관련하여 [표]와 같이 3명의 추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청하였다.

[표] 서귀포시의 2017년 하반기 우수 • 모범공무원 추천 요청 현황

(단위: 명)

계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3	1	1	1

자료: 서귀포시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17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되고 자체 공적심사 전에 이와 같은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를 엄밀히 조사하여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물의야기 여부는 포상대상자 소속기관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표]의 추천 대상자 중 C에 대해서는 2015. 7. 15. 제주특별자치도감사 위원회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조사개시 통보를 한 바 있고 [별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건축허가 사건 일지"와 같이 같은 해 9. 23. 공사중지 명령에 따라 행정소송(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되는 등 2017. 3. 1. 법원의 화해권고결정과 같은 해 9. 13. 건축물 사용승인이 날 때까지 2년 넘게 법적 분쟁 및 민원이 계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조사개시 통보를 받고, 장기간의 법적 분쟁 및 민원을 유발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C을 공적심사 및 정부포상 추천요청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서귀포시 ◀과 U과 ◆팀장 V, 과장 W은 C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를 접수·관리하고 있는 ♠과(♣팀)에 비위사실 조회를 요청하거나 요청하도록 하지 않은 채,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의 징계이력만 확인하고서는 C이 포함된 심사안건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7. 11. 17. '2017년 하반기 우수·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 추천 문건'을 기안 또는 결재하여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2015. 7. 15.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통보를 받고, 2017년 9월까지 2년 넘게 법적 분쟁 및 민원을 유발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C이 2017. 12. 29. 국무총리표창을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18. 2. 27.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절대정화구역) 내에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가(2015. 2. 6.)하여 법원의 화해

권고결정(2017. 3. 1.) 때까지 2년 1개월여 동안 법적 분쟁을 유발하는 등 물의를 야기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유치원의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2017. 9. 13.)에도 불구하고 <u>2</u>018년 2월까지 숙박업 영업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C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인사위원회는 2018. 3. 19. 이 건 비위사실을 인정하여 견책으로 양정하면서도 국무총리표창 2건(2005. 12. 31., 2017. 12. 29.)과 장관표창 1건 (2008. 9. 30.)을 감안하여 포상감경, 불문경고로 의결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서귀포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공적심사와 더불어 포상업무 추진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장은

- ① 앞으로 조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장기간의 법적 분쟁 및 민원을 유발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포상 추천 및 요청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건축허가 사건 일지

일시	내용
2015. 1. 9.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
2015. 2. 6.	숙박시설 건축허가
2015. 6. 3.	성신유치원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숙박시설 신축 관련 민원 제기
2015. 6. 4.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서귀포시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정화요청
2015. 6. 8.	서귀포시가 건축주에게 공사중지 명령(1차)
2015. 6. 30.	서귀포시의 법률자문 결과 생활숙박시설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음
2015. 7. 2.	건축주의 공사재개 요청
2015. 7. 8.	공사중지 명령 해제
2015. 7. 9.	생활숙박시설도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는 구 교육인적자원부의 질의회신을 받음
2015. 7. 10.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서귀포시의 건축허가에 대한 조사 요청
2015. 7. 15.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서귀포시에 C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
2015. 9. 23.	공사중지 명령(2차)
2015. 10. 23.	생활숙박시설도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음
2015. 11. 12.	건축주의 공사중지 명령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 제기
2015. 12. 2.	제주지방법원의 공사중지 명령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2017. 1. 4.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1차)
2017. 2. 20.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 처분
2017. 3. 1.	공사 완료로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판결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 화해권고 결정
2017. 7. 24.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2차)
2017. 9. 13.	유치원 이전 후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2017. 9.~ 2018. 2.	유치원 이전이 완료되지 못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지속

자료: 서귀포시 제출자료 재구성

개별처분요구안 (7)번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명단공표사업장(산재다발)의 정부포상 부당 추천

소 관 기 관 행정안전부

조 치 기 관 행정안전부

내 용

1. 업무 개요

행정안전부는 2017. 12. 1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발전 유공 4개 단체에 대해 [표 1]과 같이 정부포상을 결정·통보하였다.

[표 1] 지역발전 유공(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부포상 현황

구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4개 단체	■ 경기도 부천시 ■ 사단법인 ফেকে	■ 서울특별시 강동구 ■ ♨♨협의회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17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이 제한되나 사업장 또는 임원등이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17. 6. 30.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단체 선정계획'에 따라 접수된 41건(지방자치단체 24건, 학교 4건, 시민단체 13건)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절차를 거쳐 [표 2]와 같은 10개 단체 또는 기관을 선정하였다.

[표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단체 선정 현황

순위	지방자치단체	민간, 교육기관 등
1	■ 경기도 부천시	■ 사단법인 ☞☞
2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협의회
3	■ 전라북도 전주시	• 🗐
4	■ 강원도 춘천시	■구미정보고등학교
5	■ 경상북도 구미시	■ 주엽초등학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 추천 단체의 불공정행위 등 조회' (2017. 9. 25.)에 대해 2017. 9. 27. [표 3]과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경상북도 구미시가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공표된 바 있다는 사실을 회신하였다.

[표 3] 정부포상 추천제한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신 현황

구분	공고번호	사유	공고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385호	산재다발 사업장	2016. 12. 14.
경상북도 구미시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4-369호	산재다발 사업장	2014. 11. 28.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고용노동부는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 추천가능 여부 검토 요청"(2017. 10. 16.)에 대해 2017. 11. 22. '경상북도 구미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며 '서울특별시 강

동구'는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공표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천이 제한된다고 회신한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추천함으로써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행정안전부 ♥과 X는 2017. 11. 29. 위 고용노동부의 회신공문(2017. 11. 23.)을 열람하고도 경상북도 구미시는 추천이 제한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추천이 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하고서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대해 2017. 11. 30. 추천제한 조회결과 해당 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과 공적조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2. 1. 국무총리표창 대상자로 추천하는 공문을 기안하였으며, Y은 2017. 11. 23. 위 고용노동부의 회신공문을 열람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숙지하여 시정하도록 하지 않은 채 이 건 추천공문에 그대로 검토·결재하였다.

이에 따라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공표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된다고 회신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대해 2017. 12. 15.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행정안전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포상 관련부서와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 ①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공표되어 추천이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포상 추천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개별처분요구안(8)번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조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정부포상 추천 미철회

소 관 기 관 교육부

조 치 기 관 교육부

내 용

1. 업무 개요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에서 2017. 10. 18. 통보한 '2017년 우수공무원 포상계획'에 따라 같은 해 11. 23. ★국 ◎과 E(현 ■팀) 등 71명을 행정안전부에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17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정부포상 추천 이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로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또는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에 해당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는 2017. 12. 15. E 등 9명에 대해「감사원법」제32 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였음을 통보(교육정보화과 워크숍 개최에 관한 사 항)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E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을 지체 없이 철회하여 조시개시 통보를 받은 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행정안전부는 2017. 10. 18. "2017년 우수공무원 포상계획 통보" 문서에 「2017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사유 등 포상기준을 준수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 ◈과 징계·포상 담당 Z, ◆팀장 AA, 과장 AB은 위 포상계획에 따라 E이 포함된 2017년 우수공무원 추천 문건을 작성·결재하여 2017. 11. 23.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다.

이후 Z 등 3명은 2017. 12. 19.과 12. 20. 감사원에서 E에 대해 통보한 조사개시 문건을 각각 열람했으면서도 E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을 철회하도록 하는 등의조치 없이 그대로 두었다.

이에 따라 2017. 12. 15.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E이 같은 해 12. 29. 대통령표창을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2018. 4. 2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한 E에 대한 비위사실을 교육부에 통보하였고, 교육부의 경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의결 요구(2018. 5. 4.)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8. 28. 법원의 과태료 재판결과 통보 시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에서는 업무담당자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포상 업무 관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교육부장관은

- ① 앞으로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자가 정부포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포상 추천 및 철회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개별처분요구안 (9)번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정부포상 추천 미철회

소 관 기 관 우정사업본부

조 치 기 관 우정사업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우정사업본부는 2016. 11. 2. [표]와 같이 2016년 하반기 정부포상과 관련하여 103명의 추천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였다.

[표] 2016년도 하반기 우정사업본부의 정부포상 추천 요청 현황

(단위: 명)

계	모범공무원	근정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대한민국 공무원상
103	82	1	8	9	3

자료: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1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정부포상 추천 이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로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또는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지체 없이 정부포상 추천을 철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의 추천 대상자 중 F(당시 △단 ◎과장, 현 경인지방우정청 € 국장)에 대해서는 추천 이후 40여 일이 지난 2016. 12. 19.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수사개시 통보(죄명: 폭행)를 받았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는 수시개시 통보를 받은 F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의 철회를 지체 없이 요청함으로써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우정사업본부 ◈과는 2016. 11. 2.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u>절차</u>(2016. 11. 1. 서면)를 거쳐 [표]와 같은 103명의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하면서 위 본부 ① 실에는 추천제한 사항이나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에 대해 따로 확인 또는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채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징계처분 여부 등만을 확인하고서는 물의를 야기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F의 정부포상 추천사실을 알 수 없었던 우정사업본부 (●실에서는 2016. 12. 22. F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당시 본부장(AC, 2017. 12. 31. 퇴직)에게 보고하고도 이를 추천부서인 ◈과에 문서로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³)위 보고에 배석했던 ◈과장 AD(2017. 8. 17. 퇴직)은 정부포상 추천의 철회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수사개시 통보 등 정부포상 추천 철회사유가 발생한 F가 2016. 12. 31.

³⁾ AE는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문답에서 2016. 12. 22. F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AC 본부장 (2017. 8. 17. 퇴직)에게 보고할 때 ◈과장이 배석했기 때문에 별도로 통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하였고, 당시 ◈과장 AD은 2018. 12. 31. 퇴직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는 이 건 수사개시 통보와 관련하여 2017. 4. 7. 노상에서처음 보는 사람을 폭행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행위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견책' 상당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우수공무원(대통령표창 2016. 12. 31.)으로 선발된 공적과 장관표창(2014. 4. 22.)을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우정사업본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각종 포상 추천 시 ◈과에서는 추천 대상자를 ●실로 통보하고, ●실은 추천일 이후에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 시 ◈과로 통보하여 포상 추천이 철회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우정사업본부장은 앞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자가 정부포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포상 추천 요청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개별처분요구안 (10)번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교육부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고도 정부포상 추천 미철회

소 관 기 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 치 기 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15 세계 표준의 날 유공"과 관련하여 2015. 6. 18. 공과대학 ○학부 교수 G에 대한 정부포상의 추천을 한국표준협회에 요청(산업통상자원부)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15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와 관계행정 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는 정부포상의 추천이 제한되고, 정부포상 추천 이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추천권자는 지체 없이 구 행정자치부(현 행정 안전부)에 해당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2015. 8. 17.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를 통해 '연구비 지원사업 연구과제'를 부당 수행한 교수 G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같은 해 9. 16. 교수 G이 포함된 위처분요구에 대해 교육부에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교육부에서 징계처분을 요구한 교수 G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의 철회를 지체 없이 요청함으로써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한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에서 2015. 5. 15. '2015년 세계 표준의 날유공자 포상 추천서'를 ●과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공고문에는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한 추천제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과 AF는 2015. 5. 20. 개최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5. 21. 교수 G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제한 여부 확인결과 '해당 없음'이라는 공문을 기안·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공과대학(○학부)에서는 같은 해 6. 18. 한국표 준협회에 교수 G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AF는 2015. 9. 21.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에 따른 신분상조치(경징계) 대상자 조치계획' 문건을 기안·처리하면서 교수 G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및 재심의 신청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정부포상 추천의 철회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공과대학에 관련 사실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아 정부포상이 제한되는 교수 G이 2015. 10. 23. 홍조근정훈장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후 교육부의 재심의 청구기각(2015. 12. 17.)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징계 의결 요구(2016. 1. 15.)에 따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5. 31. 비위사실을 인정하여 견책으로 의결하고도 대통령표창⁴⁾ 수여사실 (2015. 10. 23.) 등을 참작하여 경고할 것을 권고하였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같은 해 6. 16.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담당자 간, 부서 간 업무공유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정부포상 추천제외 대상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하겠다면서도 관계행정 기관 징계처분 요구의 적용과 관련하여 당초 징계처분 요구 시점이 아니라 재심의 결과가 확정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재심의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기각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처분 요구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의 경우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날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재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은

- ① 앞으로 관계행정기관에서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포상 추천 및 철회 요청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⁴⁾ 교수 G이 2015. 10. 23. 받은 포상은 홍조근정훈장이나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위원 회는 징계의결서에 대통령표창으로 명시하였음

개별처분요구안 (11)번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시·도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고도 정부포상 추천 미철회

소 관 기 관 창원시

조 치 기 관 창원시

내 용

1. 업무 개요

창원시는 2017. 11. 2. 2017년도 정부포상과 관련하여 [표]와 같이 12명의 추천을 경상남도에 요청하였다.

[표] 창원시의 2017년도 정부포상 추천 요청 현황

(단위: 명)

계	우수공무원(국무총리표창 이상)	모범공무원(국무총리표창)
12명	1명	11명

자료: 창원시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17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는 정부포상의 추천이 제한되고, 포상 추천 이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추천권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에 해당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의 추천 대상자 중 H(♣과장)에 대해 2017. 11. 23. 경상남

도의 징계처분 요구('창원 문화복합타운 추진 부적정')가 있었고, 창원시는 같은 해 12. 20.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창원시는 이와 같이 징계처분 요구 및 징계의결 요구 등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H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의 철회를 지체 없이 요청함으로써 징계처분 요구 등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경상남도에서는 2017. 10. 24. '2017년도 정부포상 추천 및 연말 도지사 표창계획'을 통보하면서 「2017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 정한 추천제한 대상자를 명시하고 추천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는 등 표창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추천의 철회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표창계획에 따라 창원시 ■과 상훈담당 AG과 과장 AH은 2017. 11.

2.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와 같이 H이 포함된 2017년도 정부포상 추천 문건을 각각 결재하여 경상남도에 제출하였다.

또한 AG과 과장 AH은 H이 포함된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등 현황 통보' 문건 (2017. 12. 22.)과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자 통보' 문건(2017. 12. 25., 12. 26.)을 각각 열람했으면서 H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의 철회를 요청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이에 따라 2017. 11. 23. 경상남도의 징계처분 요구 및 같은 해 12. 20. 창원시의 징계의결 요구와 같이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로 확인된 H이 2017. 12. 29. 국무총리표창을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후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서는 2018. 1. 18. H의 비위사실을 인정하면서도「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표창감경하여 견책으로 의결하였고,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창원시를 대표하는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판단하여 불문경고로 변경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창원시는 정부포상 추천자의 사후관리를 꼼꼼히 했어야 함에도 연말 각종 표창,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정기인사 및 퇴임식 준비 등 당면 업무 증가로 정부포상 추천 의 철회시기를 일실한 과실이 있다면서 향후 정부포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조치할 사항 창원시장은

- ① 앞으로 징계처분 요구 등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포상 추천 및 철회 요청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개별처분요구안 (12)번

감 사 원 주 의 유 구

제 목 불문경고 처분을 하고도 정부포상 추천 미철회

소 관 기 관 서천군

조 치 기 관 서천군

내 용

1. 업무 개요

서천군은 2015. 10. 21. 충청남도에서 통보한 '2016년 재해대책 유공 정부포상 추진계획'에 따라 같은 해 10. 28. ☑과 K(현 피사업소)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을 충청남도에 요청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15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되고, 정부포상 추천 이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추천권자는 지체 없이 구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해당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K는 서천군 자체감사(「장항읍 종합감사」)를 통해 2016. 4. 19. 경 징계 의결요구를 받고 같은 해 4. 28.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서천군은 이와 같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K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의 철회를 지체 없이 요청함으로써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충청남도(□과)는 2015. 10. 21. "2016년 재해대책 유공 정부포상 추진계획"을 통보하면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와 같은 정부포상 추천 제한<u>사유</u>를 고지함과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15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서천군 ☑과(☑目)는 2015. 10. 28.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K를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징계 등과 관련하여 인사 및 상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 ▲팀의 확인 또는 협조를 받았다.

그런데 □실 ▲팀은 2016. 4. 18. K에 대한 경징계 의결요구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과는 같은 해 4. 28. 불문경고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도 정부포상 추천의 철회를 요청하도록 ☑과에 관련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특히, ☑과장 AI(현 △과장)는 상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④팀과 인사·징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④팀을 총괄하면서 2015년과 2016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열람한 바 있고, K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2015. 10. 28.) 및 인사위원회(2016. 4. 26.)에 위원으로 참여했으면서도 정부포상 추천의 철회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하지 않았다.

그리고 K는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가 고지되고 「2015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이 첨부된 충청남도의 "2016년 재해대책 유공 정부포상 추진계획" 문건을 열람한

바 있고, 추천부서인 ☑과 ☑팀장으로서 '징계, 수사개시 등 표창 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을 작성·서명한 바 있으면서도 본인의 경징계 의결요구 및 불문경고 처분과 관련하여 추천의 철회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6. 4. 28. 불문경고 처분을 받아 정부포상이 제한되는 K가 같은 해 7. 28. 대통령표창을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서천군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로 정부포 상 추천부터 최종 확정 시까지 유관부서(추천부서, 상훈부서, 감사부서, 인사부서) 간 에 적극 협조하여 부적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천군수는

- ① 앞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가 정부포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포상 추천 철회 및 요청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개별처분요구안 (13)번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명단공표사업장(산재다발)의 정부포상 가능 여부 확인절차 미이행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조 치 기 관 보건복지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보건복지부는 2017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과 관련하여 2017. 12. 1. [표 1]과 같이 50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정부포상을 행정안전부에 추천하였다.

[표 1] 2017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추천 현황

(단위: 개)

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50	1	1	22	26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17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이 제한되나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할 때에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 1]의 포상 추천대상 기관·단체 또는 개인 중 아산시의 경우 2015. 12. 16. [표 2]와 같이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공표된 바 있다.

[표 2] 아산시 산재다발 사업장 공표 현황

해당 사업장	공고번호	사유	공고일
아산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360호	산재다발 사업장	2015. 12. 16.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공표된 아산시에 대한 정부포상을 추천하기 위해 서는 추천 가능 여부(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대한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보건복지부는 2017. 9. 7. 수립한 "2017년 보육사업 유공자 정부포상 계획"에따라 [표 3]과 같이 민간기관·단체 81개, 지방자치단체 13개, 공사·공단 2개와 공무원 5명의 정부포상 신청을 접수하였다.

[표 3] 2017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신청 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민간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공무원
101	81	13	2	5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 10. 23. 민간기관·단체 81개의 경우 정부포상 결격사항(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행정처분 등)에 대한 확인 및 조회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으면서도 13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통상적인산업재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는 확인 및 조회요청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표 2]와 같이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공표된 아산시가 정부포상 추천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확인 없이 2017. 12. 1. 보건복지부의 추천을 받아같은 해 12. 19. 대통령표창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2017년에는 확인하지 않은 시설(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이 있었으나, 2018년부터는 민간 사업장은 물론 공무원 조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발생 사실 등을 조회하도록 시정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 정부포상 추천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확인 없이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공표된 지방자치단체를 정부포상 대상으로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포상 추천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개별처분요구안 (14)번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공익제보에 따라 자체조사 중인 자의 정부포상 부당 추천

소 관 기 관 서울특별시

조 치 기 관 서울특별시

내 용

1. 업무개요

서울특별시는 2016. 3. 30.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유공과 관련하여 ◀ 실 D의 정부포상 추천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15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5)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정부포상이 제한되는데, 자체공적 심사 전에 이와 같은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를 엄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는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포상 추천 이후 추천 제한 사유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 추천권자는 지체 없이 구 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에 해당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6. 3. 15. D에 대한 공익제보('근무태만 및 민원처리 부적정')

^{5)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2016. 4. 21.부터 적용함

가 접수되었고 같은 해 3. 22. 담당 조사관(▶실 AJ, 2017. 8. 31. 퇴직)이 지정되어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공익제보가 접수되어 자체조사가 시작된 D을 공적심사 및 추천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포상 추천 이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지체 없이 정부포상 추천의 철회를 요청함으로써 자체조사 중인 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서울특별시 ▲과는 2016. 3. 24. D이 포함된 정부포상 대상자 3명에 대한 비위조회(본청 감사부서 또는 외부감사, 수사기관에서 감사, 수사 중인 자 등)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실 등 관계부서에 의뢰하였다.

그런데 ▶실 AK은 '행정포털 업무관리 시스템'의 메모보고를 통해 조사업무 담당 전(全) 직원(28명)에게 비위사실을 조회·보고하도록 한 후 D을 조사 중인 AJ을 포함하여 17명이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2016. 3. 28. '해당 없음'으로 비위사실 조회결과 회신 문건을 기안하였고, ▶팀장 AL는 이와 같은 메모보고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확인하도록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조사담당관 대결)함으로써 서울특별시에서 2016. 3. 30. D의 정부포상 추천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하게 되었다. 6)

더욱이 AK과 AL는 D에 대해 공익제보가 접수되어 비위사실을 조사 중이라는 것이 2016. 4. 5.과 4. 6. 각각 메모보고에 입력되었고 알림기능을 통해 고지되었는 데도 정부포상 추천의 철회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두었다.

⁶⁾ 서울특별시제1공적심의회는 추천요청 이후인 2016. 4. 7. D 등에 대해 추천제한 사항 없음으로 의결함

이에 따라 2016. 3. 15. 공익제보가 접수되어 같은 해 3. 22. 자체조사가 시작된 D이 같은 해 6. 9. 대통령표창을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후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는 2016. 11. 14. 공문을 접수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민원질의 및 법정 진술에서 허위로 답변한 D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고,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는 2017. 2. 27. D의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으로 의결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특별시는 향후 비위사실 조회 의뢰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익제보조사팀 총괄 담당의 확인을 거쳐 조회결과가 회신될 수 있도록 하고, 비위사실 조회가 기간 내에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 ① 앞으로 공익제보 등이 접수되어 자체조사 중인 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포상 추천 및 철회 요청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개별처분요구안 (15)번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시·도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고도 정부포상 추천 미철회

소 관 기 관 하동군

조 치 기 관 하동군

내 용

1. 업무 개요

하동군은 2017. 11. 7. 2017년도 정부포상과 관련하여 [표]와 같이 5명의 추천을 경상남도에 요청하였다.

[표] 하동군의 2017년 정부포상 추천 요청 현황

(단위: 명)

	우수공무원(국무총리표창이상의 표		
계		우수공무원(장관표창)	모범공무원(국무총리표창)
	창)		
5	1	2	2

자료: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17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에서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는 정부포상의 추천이 제한되고, 포상추천 이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추천권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에 해당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와 같이 추천된 자 중에서 I(전터 자)에 대해 2017. 12. 4. 경상남도의 징계처분 요구('수출용 가루녹차 살균기 구매 수의계약 및 물품관리 부적 정')가 있었고, 하동군에서는 같은 해 12. 7.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징계처분 요구 및 징계의결 요구 중인 I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의 철회를 지체 없이 요청함으로써 징계처분 요구 등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경상남도는 2017. 10. 24. "2017년도 정부포상 추천 및 연말 도지사 표창계획"을 통보하면서 「2017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 정한 추천제한 대상을 명시하고 추천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는 등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즉시 포상추천의 철회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표창계획에 따라 하동군 ☎과 AM과 과장 AN은 2017. 11. 3. 개최된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AM은 2017. 11. 7. I이 포함된 2017년도 정부포상 추천 문건(담당 AO 작성)을 결재(전결)하여 경상남도에 제출되게 하였다.

또한 AM과 AN은 하동군에서 2017. 12. 7.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 보낸 비위공 무원 징계의결 요구 문건에 협조자로 결재하고, 다음 날인 12. 8. 온나라에 접수된 2017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 통보 문건(I 포함)을 각각 열람(12. 11., 12. 12.)했 으면서도 I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철회를 요청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이에 따라 2017. 12. 4. 경상남도의 징계처분 요구 및 같은 해 12. 7. 하동군의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I이 같은 해 12. 29. 대통령표창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 되었다.

이후 경상남도인사위원회는 2018. 1. 18. I의 비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방 공무원 징계규칙」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표창감경하여 견책으로 의결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하동군은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연말 인사준비 및 각종 행사 등으로 포상 철회 요구 조치가 부족하였다면서 향후 징계의결 및 징계 사유 발생 시 포상담당자의 공람 협조를 받도록 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 ① 앞으로 징계처분 요구 등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포상 추천 및 철회 요청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개별처분요구안 (16)번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시·도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고도 정부포상 추천 미철회

소 관 기 관 순천시

조 치 기 관 순천시

내 용

1. 업무 개요

순천시는 2017. 10. 31. 2017년도 정부포상과 관련하여 [표]와 같이 3명의 추천을 전라남도에 요청하였다.

[표] 순천시의 2017년 정부포상 추천 요청 현황

(단위: 명)

계	우수공무원(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표창)	우수공무원(장관표창)	
3명	1명	2명	

자료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17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는 정부포상의 추천이 제한되고, 포상추천 이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추천권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에 해당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와 같이 추천된 자 중에서 J(☎과장)에 대해 2017. 11. 15.

전라남도의 징계처분 요구('하천 횡단교량 특허자재 선정 부적정')가 있었고, 순천시는 같은 해 12. 8.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징계처분 요구 및 징계의결 요구 중인 J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의 철회를 지체 없이 요청함으로써 징계처분 요구 등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전라남도는 2017. 10. 25. "2017년도 우수공무원 선발계획<u>통보"</u>를 통보하면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와 같은 추천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서 정한 추천제한 대상자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선발계획에 따라 순천시 ◀과 AP와 과장 AQ는 2017. 10. 31.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와 같이 J가 포함된 2017년 우수공무원 표창 추천문건(AR이 작성)에 각각 결재하여 전라남도에 제출되게 하였다.

또한, AP와 과장 AQ는 ◀과에서 2017. 11. 21. 보낸 "2017년도 전라남도 정기 종합감사 결과 알림(J포함)"을 각각 열람하고, 같은 해 12. 12. 순천시 ☜실에서 보낸 "성실의무 위반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문건(J포함)도 각각 열람하고도 J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의 철회를 요청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이에 따라 2017. 11. 15. 전라남도의 징계처분 요구와 같은 해 12. 8. 순천시의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J가 2017. 12. 29.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 되었다.

이후 전라남도인사위원회는 2018. 3. 5. J의 비위사실을 인정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에 따라 감봉 1개월로 의결하였으나, 같은 해 8. 8. 전라남도지방소 청심사위원회는 사무관의 경우 국무총리표창 실적은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데도 이 를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불문경고로 변경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순천시에서는 근무성적 평정, 정기인사 준비,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연말에 업무가 과다한된 상황에서 우수공무원 포상추천 대상자의 추천제한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라면서 앞으로 포상추천 대상자의 결격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천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상급기관에 추천철회를 요청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 ① 앞으로 징계처분 요구 등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포상 추천 및 철회 요청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